

[압수할 물건]

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

□ 압수할 물건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(별지)

○ 대상기간 : 2014. 5. 12.부터 2014. 5. 21.까지

○ 압수할 물건

- 1) 피의자 용해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(●●●●●●●●) 단말기
- 2) 피의자 용해인의 휴대전화 ●●●●●●●●의 카카오톡과 관련된,
 - 용해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
 - 용해인과 대화를 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(계정정보는 아이디, 닉네임, 가입일, 인증 휴대전화 번호,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,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)
 - 대상 기간 동안 용해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정보, 동영상 정보 일체

[수색·검증할 장소, 신체 또는 물건]

- 1) 피의자 용해인의 신체(영장집행 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한함), 휴대전화를 보관,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방, 의류
- 2)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 H스퀘어 N동 6층 (주)카카오 본사 또는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